

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797
----------	------

2025년 6월 17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5월 26일, 김지향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5년 5월 29일

다. 상정일자: 제3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5년 6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김지향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통해 그 공헌에 대한 예우를 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로를 함께 함께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는 부족한 실정임.
- 이에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배려가 체감될 수 있도록,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대상자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 적용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로를 함께한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대상자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 (안 제5조제2항제4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박귀수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대상자를 ‘국가유공자’에서 ‘그 유족 또는 가족’까지 확대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 제5조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경제성 미달지역 등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¹⁾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비용에 반영하거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5조제2항제4호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대상자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에 따른 ‘국가유공자’에서 ‘그 유족 또는 가족(이하 “유가족”)’까지 확대하여 유공을 예우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다만, 법에서 ‘유가족’의 범위²⁾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- 한편, 서울시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(우선순위) 범위 확대는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, 조례 개정으로 추가 적용되는 대상은 현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(3,637세대)의 1% 미만³⁾으로 추정되어 그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.

1) 경제성 미달 지역의 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 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함

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배우자, 2. 자녀, 3. 부모, 4. 성년인 직계비속(直系卑屬)이 없는 조부모

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(直系尊屬)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

3) 서울시 도시가스 미공급 수요 가구수 3,637세대, 사업비 64억 9백만원('25.3. 기준 추정치)

서울시 도시가스 수요 가구수: 4,444,047세대('23. 기준)

서울특별시 보훈대상자 기본 현황: 본인 87,602명, **선순위 유족 48,185명**(국가보훈부, '25.5. 기준)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 중 “따른 국가유공자”를 “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원내용 및 지원대상) ① (생 략)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. 1. ~ 3. (생 략)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<u>따른 국가유공자</u> 5.·6. (생 략) ③ (생 략)	제5조(지원내용 및 지원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따른 국가유공자와</u> <u>그 유족 또는 가족</u> 5.·6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